

제1748호

2020. 3. 13.(금)

발행인 : 영등포구청장
편집인 : 홍보미디어과장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
전화 : 02-2670-7554

영등포구보

고 시

· 제2020-58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고시 1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<<http://www.ydp.go.kr>(영등포소식→새소식→영등포구보)>에 게재되고
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◎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(☎ 02-2670-7554 / 전송: 02-2670-3581)
 ◎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(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,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)
 ◎ 구보게재접수는 D-3일(월요일)까지 접수

D-3접수	→	D-2일 편집 및 교정	→	D-1일 인쇄 및 제책	→	D일 보급 및 배포
-------	---	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



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
3180244-0025-2020

고 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-58호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고시

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라 감염병(코로나19) 예방을 위해 관내 아래장소에서의 집합을 금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3월 13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- 1. 금지장소: “의사당대로, 은행로, 국회대로, 여의공원로, 당산로” 일부(인도 포함) ※상세위치도 5항 참조
2. 고시근거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2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
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- 3. 적용기간: 2020. 3. 14. 0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
4. 금지내용: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·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
5. 금지장소 위치



- 6. 벌칙조항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7. 제47조 또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된 자

7. 시행 일: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